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8. 3. 6.>

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 (제24조제1항 관련)

구분	장부 및 서류
1. 원목생산업자	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
2. 제재업자	가. 원자재 출납대장(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) 나.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.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(작성자만 해당한다)
3. 목재수입유통업자	가. 원목·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.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(작성자만 해당한다) 다.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(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)